증평군 Jeung Pyeong

군 보

www.jp.go.kr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606호 2020년 9월 4일(금)

훈 령

○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2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9

공 고

○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안 입법예고 ---------- 10

○ 2020년 증평군 재정공시(2019회계 결산) ---------- 16

회람									

발행 : 증평군 편집 : 문화체육과 (☎835-4133,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0년 9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훈령 제139호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정은「증평군 자체감사 규칙」”을 “규정은 「증평군 자체감사 규칙」(이하 “자체감사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의 면책 및 중벌조항은 자체감사 규칙 제2조 각 호의 감사대상기관 소속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일 것
2. 공무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인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소극행정 중벌요건)”을 “(소극행정 중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법·부당사항이”를 “위법·부당한 결과가”로, “중벌처리 할”을 “중벌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제2항과”를 “제2항 및”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를 “있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증평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나. 감사를 받은 기관(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 종료 이후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 청 내 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의견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지 적 사 항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감 사 부 서 책 임 자 검 토 의 견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종 합 의 견			

[별지 제4호서식]

양정심의회 심사결과

건 명						
일 시 / 장 소						
심 사 대 상 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 심사대상이 다수일 때는 건명은 일련번호로 모두 기재하고, 심사결과는 일괄 기재

20 . . .

면책 및 양정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심사 신청 및 양정심의 관리대장

일련번호	구 분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건 명	심의 대상자			처분요구	심사결과	최종처분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 구분란은 면책심사, 양정심의로 구분하여 기재.

증평군 고시 제 2020-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 B-1BL(송산리 722-1번지)에 주식회사 칸타빌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4.

증 평 군 수

1. 사 업 명 : 증평군 증평읍 송산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명칭 및 대표자 : 주식회사 칸타빌 대표 박세환
   나.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
3. 사업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 B-BL(송산리 722-1번지)
4. 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종류	사업내용	비고
주택건설사업	· 건축물명 : 증평송산 대원칸타빌 · 대지면적 : 15,075㎡ · 건축면적 : 3,109.5389㎡ (건폐율 20.63%) · 연 면 적 : 55,300.562㎡ (용적률 249.73%)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세 대 수 : 330세대 · 동 수 : 주건축물 5동 / 부속건축물 3동 · 총사업비 : 92,085,672천원 · 사업기간 : 2020. 9. ~ 2023. 6.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허가 등 관계도서는 증평군 민원과 주택팀(043-835-34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증평군 공고 제2020-682호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군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규칙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동등한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규칙안 : 별지참조

4. 의견제출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참조 : (우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043-835-4824, 팩스 : 043-835-4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20. 9. 4.~2020. 9. 24.(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학업 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훈련 등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수행한다.

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무

나. 제4조의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한 사무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동등한 권리 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2.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대회 등의 참여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및 사무수행의 적정 여부
2. 지원된 예산 집행의 적법·적정성 여부
3. 그 밖의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고, 교부한 지원금 및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공고 제2020-694호

2020년 증평군 재정공시(2019회계 결산)

◈ 우리 군의 201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37억원으로, 전년대비 3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9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6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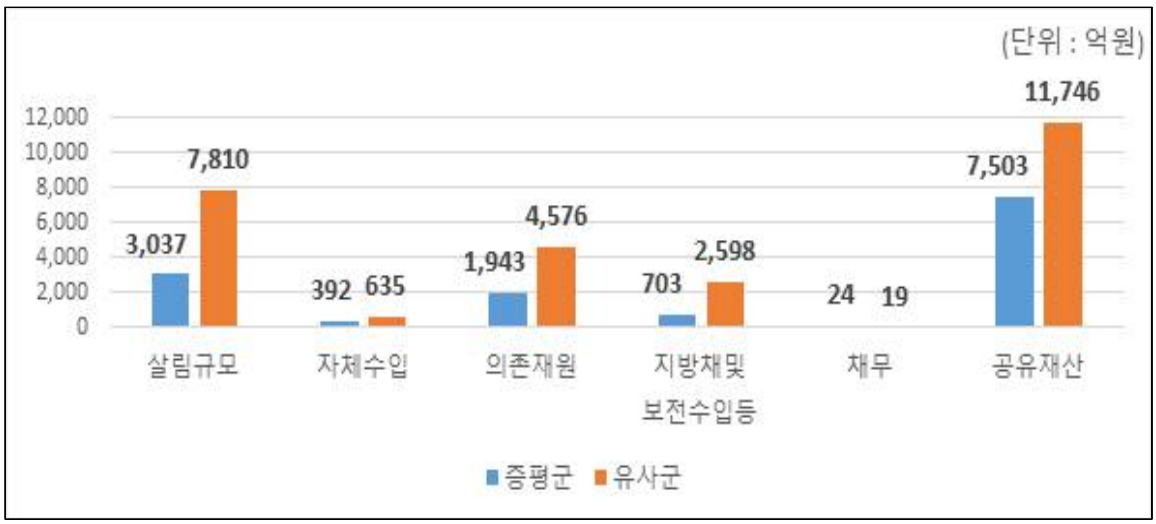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943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2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증평군의 채무는 2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4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9년도에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부지 외 376건(725억원)을 취득하고, 노안면 토지 외 7건(1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7,50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증평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810억원) 보다 4,77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35억원)보다 243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576억원)보다 2,634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9억원)보다 5억원 많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8천원)보다 26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1,746억원)과 비교하여 4,244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작고, 세입 중 의존재원이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재정 규모를 늘려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p.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 게시물 하단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관실 예산팀 박준영(043-835-3125)